

도 시 계 획 (안)

1998. 9. .

- 영등포구 부도심 상세계획구역 결정
- 여의도공원 도시계획 결정
- 여의도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
- 신길동 387-5일대 도시계획도로 결정
- 신길동 994일대 도시계획도로 결정
-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사업지 공원 결정

영 등 포 구

(도 시 정 비 과)

영등포 부도심 상세계획구역 결정

=====

1. 개요

- 위 치 : 문래동, 영등포동 1가·4가 일대
- 규 모 : 1,200,000㎡

2. 입안취지

- '98. 3. 17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도심지역으로서 성장 잠재력에 부응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
- 부도심권의 핵심지역으로 새로운 기능 육성이 필요하고 개발효과가 커 부도심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영등포동, 문래동 등 철도 북측 지역에 대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함.

3. 현재의 도시계획사항

- 도시계획사항 : 준공업지역, 일부 주거 및 상업지역

4.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

가. 공고 및 공람

- 일자 및 게재신문 : '98. 8. 14 세계일보, 경향신문
- 의견 청취 기간 : '98. 8. 14 ~ '98. 8. 28(14일간)

나. 의견접수 :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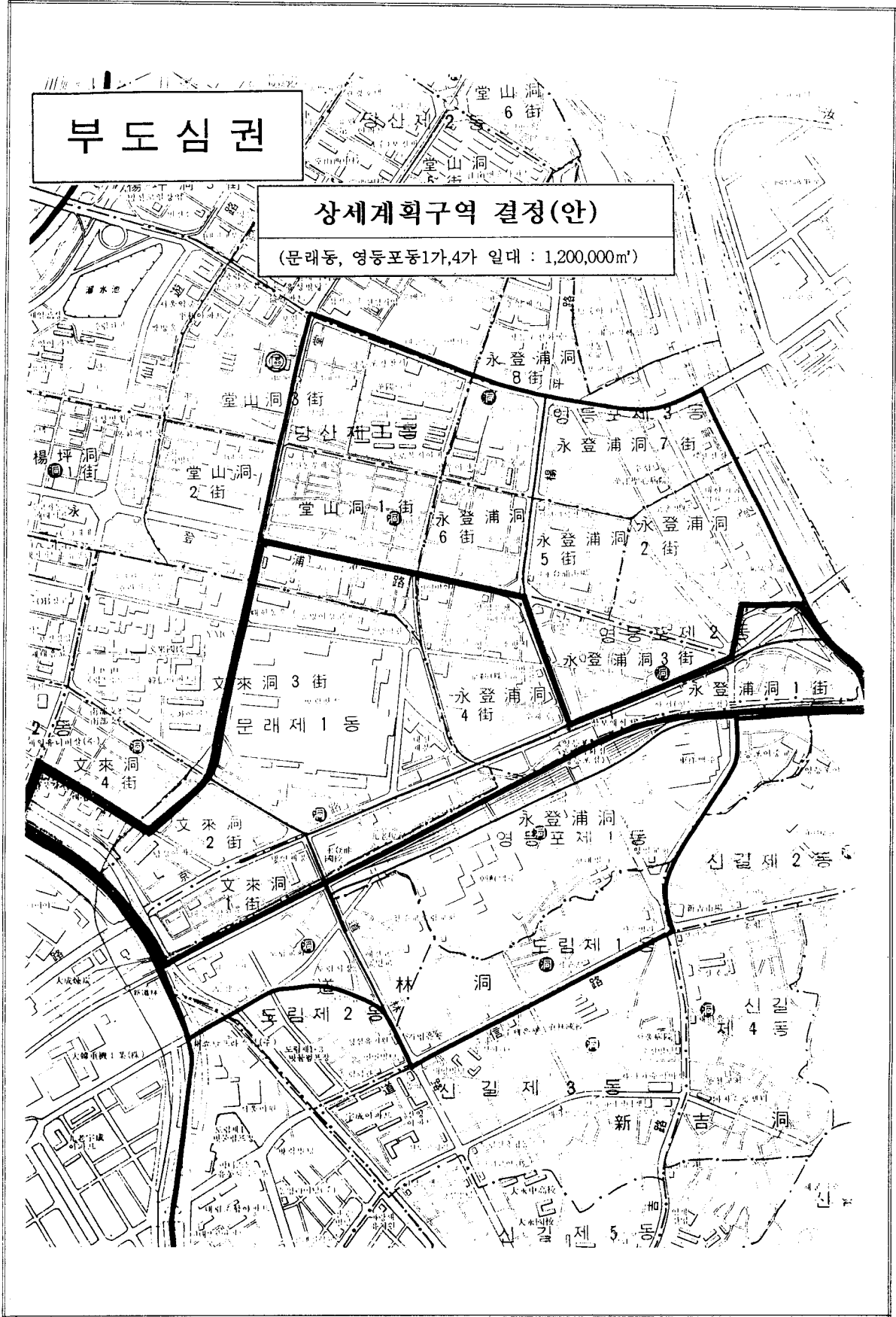
5. 기 타

-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등 관련법규 저촉사항 없음.

부도심권

상세계획구역 결정(안)

(문래동, 영등포동1가,4가 일대 : 1,200,000m²)



여의도공원 도시계획 결정

=====

1. 개요

- 위 치 : 여의도동 2번지 (여의도공원 조성부지)
- 규 모 : 229,539㎡
- 도시계획변경안 : 일반상업지역 → 자연녹지지역

2. 입안취지

- 서울시의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따라 주민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자 공원조성중인 여의도광장을 공원으로 결정코자 입안한 사항으로
 -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토지이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.
- ※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보완요청이 있었음.

3. 공원입안 현황

- 현재의 도시계획 : 일반 상업지역, 광장
 - 입안내용 : 광장 378,000㎡
 - └ 공원 : 229,539㎡
 - └ 도로 : B=20~80m, L=2,520m
- ※ '98. 6. 26 :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요청 (구 → 서울시)

4.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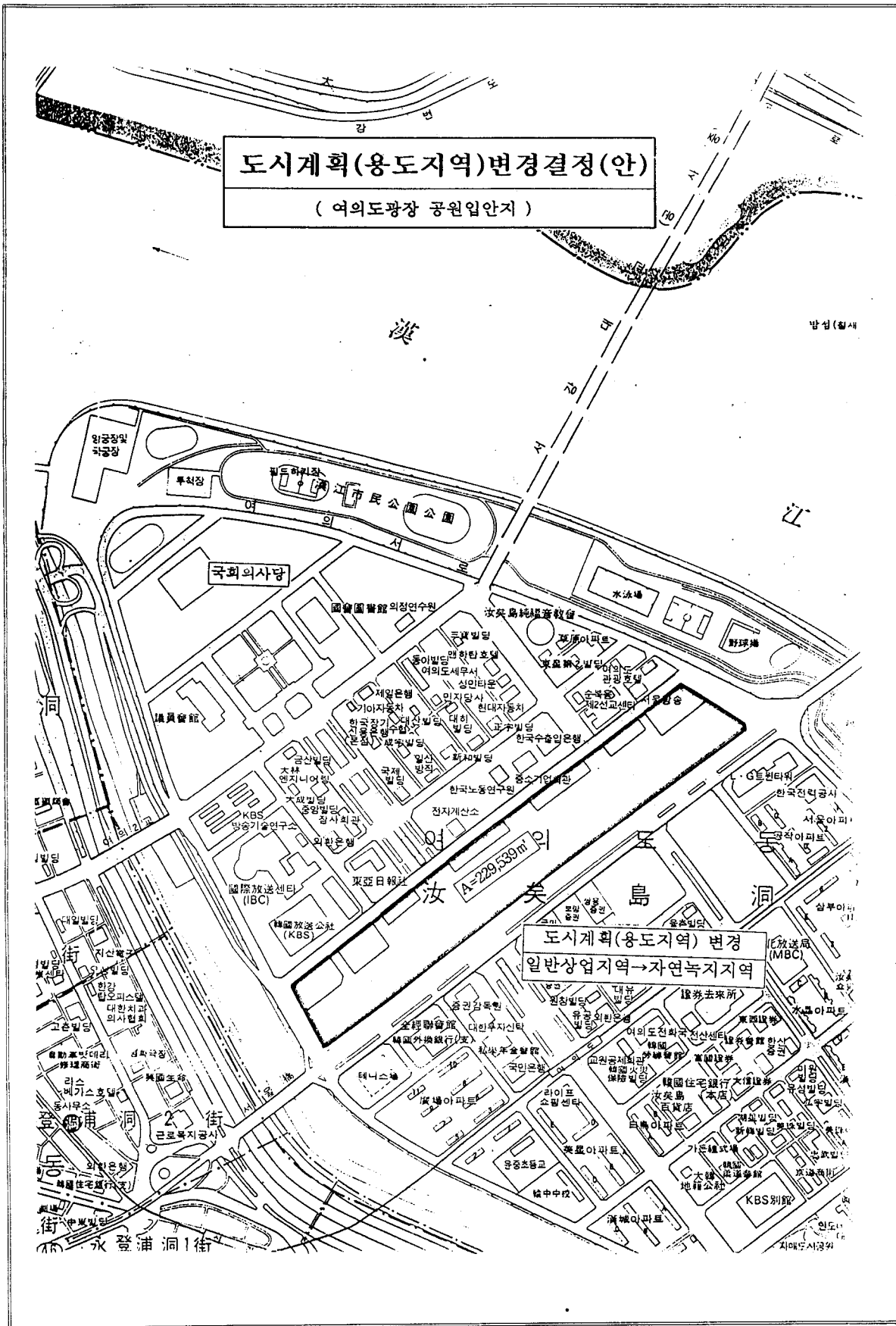
가. 공고 및 공람

- 일자 및 게재신문 : '98. 8. 14 세계일보, 경향신문
- 의견 청취 기간 : '98. 8. 14 ~ '98. 8. 28(14일간)

나. 의견접수 : 없음.

5. 기 타

-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등 관련법규 저촉사항 없음.



여의도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

1. 개요

- 위 치 : 여의도동 10~13번지 일대 (국회의사당 전면)
- 규 모 : 770,000m²
- 도시계획변경안
 - 표고 65m이하 → 표고 55m이하 : 여의도동 13~18번지(의사당 전면), 373,500m²
 - 표고 65m이하 : 여의도동 10~12번지(순복음교회주변), 396,500m²

2. 입안취지

- '78년 초부터 국회의사당 전면 최고고도지구내 토지의 건축허가시 국회사무처와 고도에 관하여 사전 협의후 처리하고 있으며,
- 협의회 의사당의 상징성, 존엄성 및 주변 건축물과의 미적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사당 건물높이(돛제외)인 표고 55m 이하로 고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재산권에 제한을 주는 임의규제이므로
- 의사당과의 조화를 이루고 기존 건물(표고 55m 이하)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서 건축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의사당 전면(여의도동 13~18번지 일대) 지역의 최고고도지구를 변경(표고 65m 이하 → 표고 55m 이하)하여 시민들에게 고도제한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도시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※ 서울시로부터 법령 미근거 규제정비에 따른 고도지구 변경요청이 있었음.

3. 현재의 도시계획사항

- 도시계획사항 : 일반 상업지역, 1종집단미관지구, 공용시설보호지구, 최고고도지구(표고 65m 이하)
- ※ 최고고도지구 결정 - 건설부고시 제109호 ('76. 7. 19)

4.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

가. 공고 및 공람

- 일자 및 게재신문 : '98. 8. 14 세계일보, 경향신문
- 의견 청취 기간 : '98. 8. 14 ~ '98. 8. 28(14일간)

나. 의견접수 :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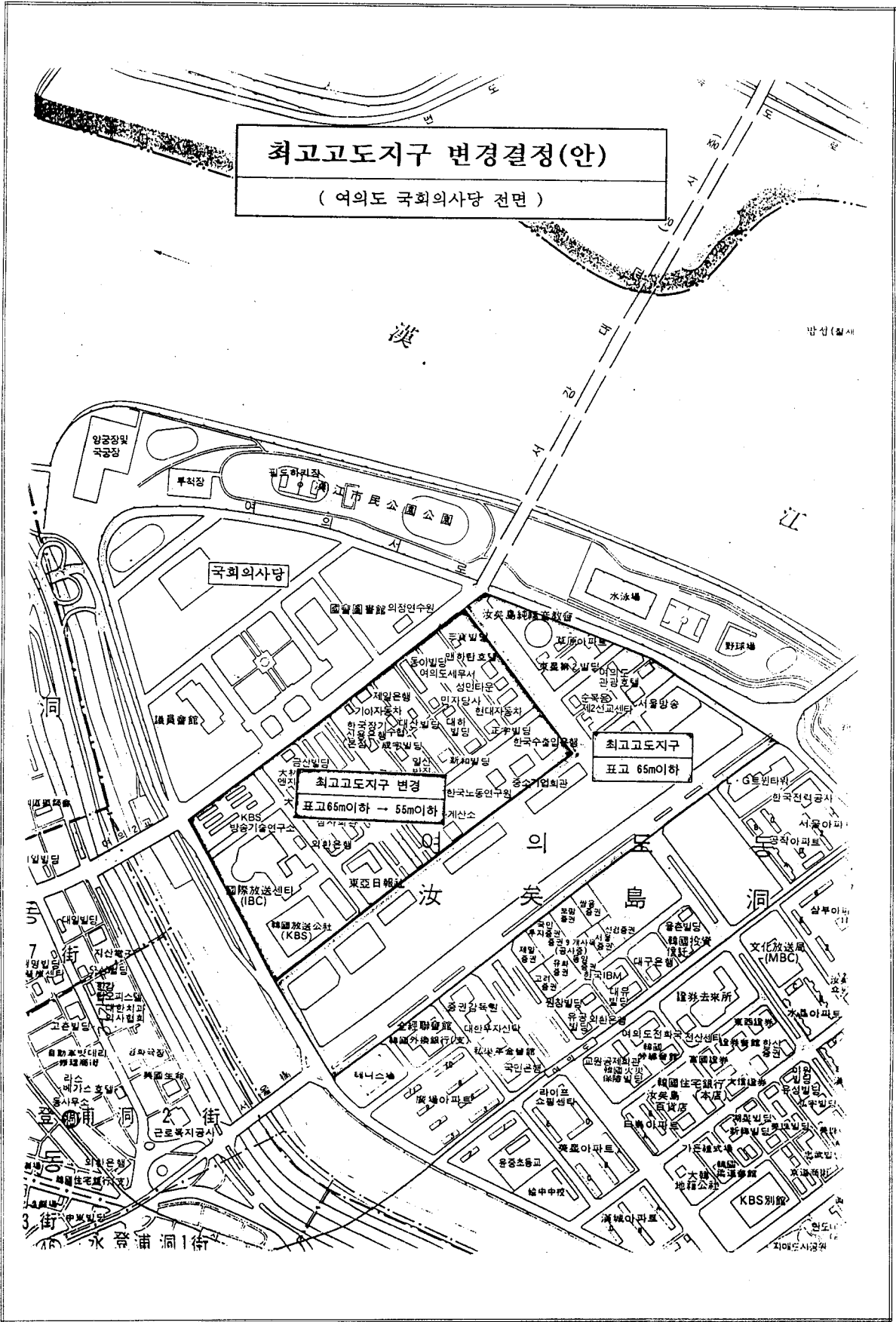
5. 기 타

-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등 관련법규 저촉사항 없음.
- 건축물 현황
 - 여의도동 13~18번지 일대

표고 55m 이하	: 61개동(7개동 신축중)
표고 55m 이상	: 1개동(고도지구 결정이전 건축)
 - 여의도동 10~12번지 일대

표고 55m 이하	: 11개동
표고 55m 이상	: 6개동(고도지구 결정이후 건축)
- 나대지 현황 : 5필지 3,213m²

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(안)
 (여의도 국회의사당 전면)



신길동 387-5일대 도시계획도로 결정

=====

1. 개요

- 위 치 : 신길동 387-5 ~ 신길동 387-6간
- 규 모 : 폭 4m, 연장 9m

2. 입안취지

- 도로결정구간은 사유지상 현황도로로 토지소유자가 우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심까지 결과 토지인수시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토록 판결되어
- 동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사업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도로기능을 확보하고자 함.

3. 현재의 도시계획사항

- 도시계획사항 : 일반 주거지역

4.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

가. 공고 및 공람

- 일자 및 게재신문 : '98. 8. 14 세계일보, 경향신문
- 의견 청취 기간 : '98. 8. 14 ~ '98. 8. 28(14일간)

나. 의견제출 - 신길동 387-5 윤석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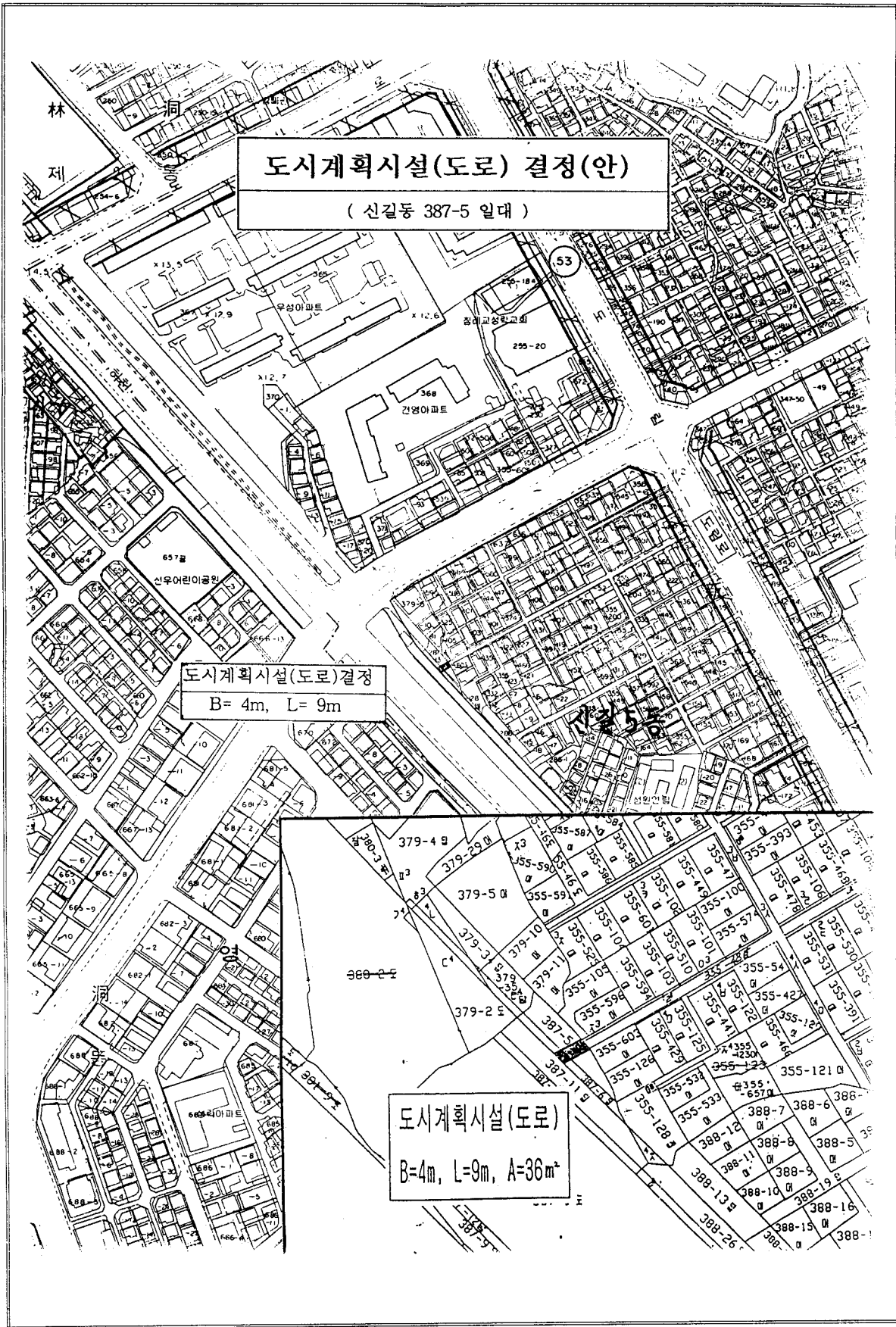
- 도로계획안에 저촉되는 신길동 387-5,6호 토지는 '93년도에 동토지 주변폭 6m 도로 개설시 분할된 잔여토지로서 당시 토지이용이 현저히 감소되어 확대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공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기각되었으나
- 이번 도로계획안을 보면 상기토지 중앙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그나마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가 양분되어 남측 삼각형 모양의 잔여토지는 전혀 쓸모없는 토지가 되므로 도로공사시 확대보상을 요망함.

다. 검토의견

- 잔여토지 확대보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.

5. 기 타

-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등 관련법규 저촉사항 없음
- 사업비 : 30,000백만원
- 저촉토지 현황 : 2필지 36㎡

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안)
(신길동 387-5 일대)

도시계획시설(도로)결정
B= 4m, L= 9m

도시계획시설(도로)
B=4m, L=9m, A=36㎡

신길동 994일대 도시계획도로 결정

=====

1. 개요

- 위치 : 신길동 994번지 일대
- 규모 : 폭 4~6m, 연장 240m

2. 입안취지

- '37. 1. 19 지정된 번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4~6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 미개설상태로 사업이 완료('66. 9. 2)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
-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및 저축건물 수용이 곤란하므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로 결정하여 도로를 개설코자 함.

3. 현재의 도시계획사항

- 도시계획사항 : 일반 주거지역

4.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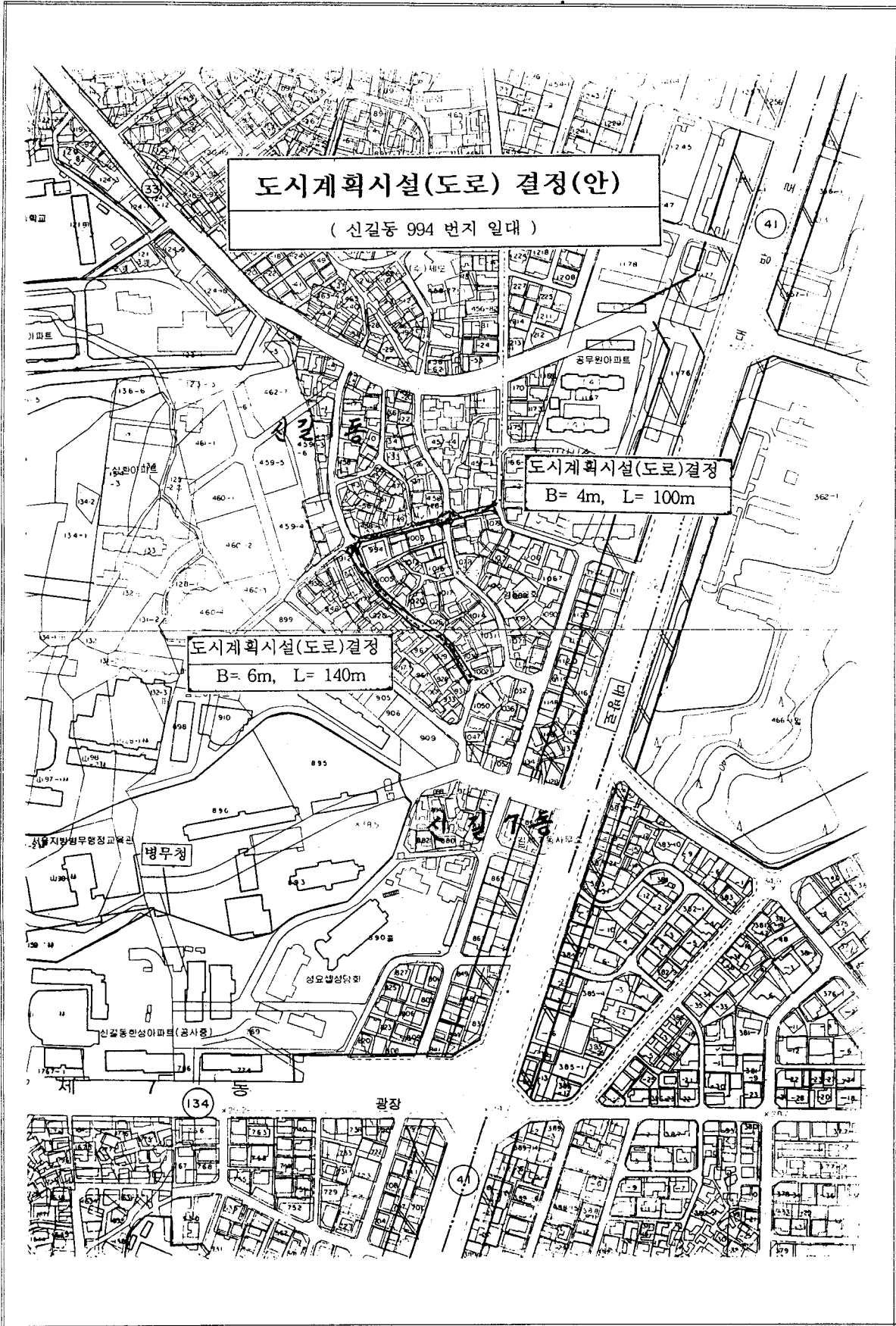
가. 공고 및 공람

- 일자 및 게재신문 : '98. 8. 14 세계일보, 경향신문
- 의견 청취 기간 : '98. 8. 14 ~ '98. 8. 28(14일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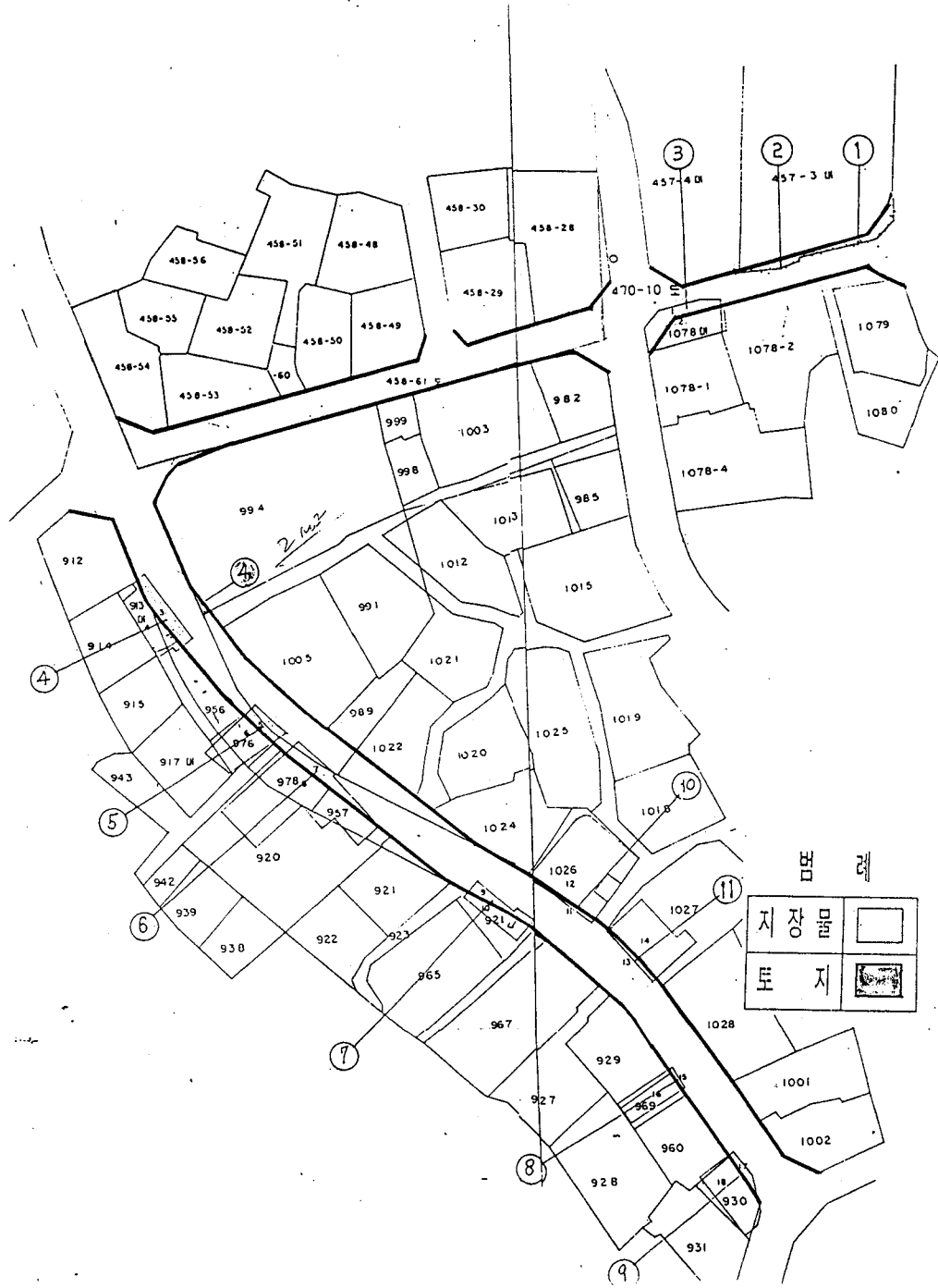
나. 의견접수 : 없음.

5. 기 타

-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등 관련법규 저촉사항 없음
- 사업비 : 420,000천원 (보상비) - 서울시 예산
- 저축토지 및 지장물 현황 : 토지 1필지(2.0㎡), 건물 11동(112.4㎡)



저촉토지및 지장물 현황



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사업지 공원 결정

1. 개요

- 위치 및 규모 :
 - 문래동 3가 9번지 일대(대선제분 부지) : 공원결정 19, 633㎡
 - 당산동 4가 90번지 일대(미개설학교 용지) : 학교 → 공원결정 23,960㎡
 - 여의도동 61-1번지 일대(미개설학교 용지) : 학교 → 공원결정 14,875㎡
→ 공용의청사 1,653㎡

2. 입안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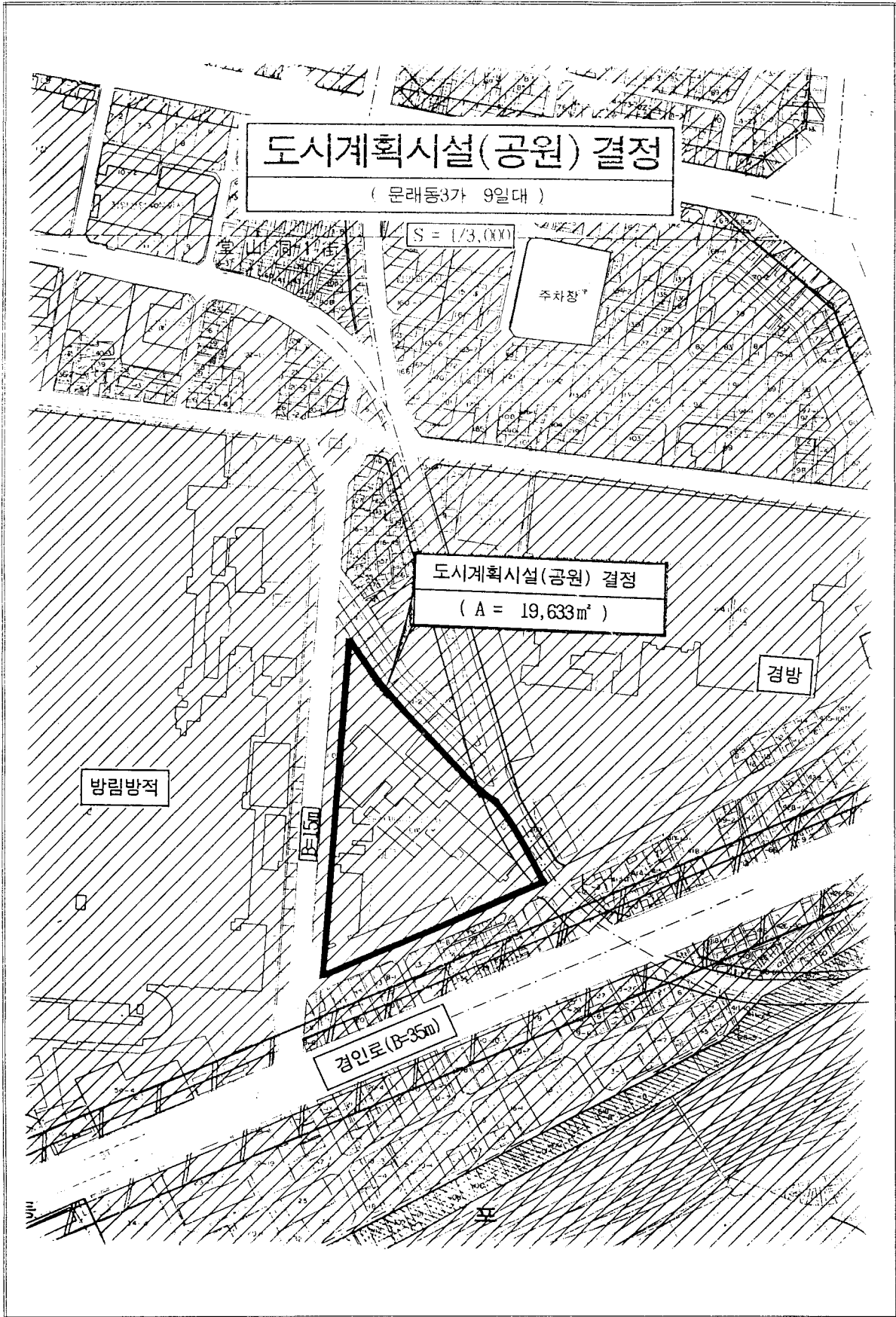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하거나 '96. 11 입안한 문래동 3가 9번지 일대와 당산동 4가 90번지 일대 외 1개소 미개설학교용지에 대하여
- '98. 7. 2 서울시로부터 공원녹지확충 5개년 연동계획('98. 6. 29)에 의거 상기 3개소를 공원사업대상지에서 제외 통보되었음.
 - 제외사유 : 주변여건, 효과성, 시 재정형편과 타구에 비해 공원계획지가 집중배치되어 있다는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공원대상지에서 제외

3. 검토의견

- 서울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 서울시 예산(128,430백만원)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형편 등으로 공원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었고
- 우리구 재정여건상 구 자체사업에 의한 공원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가 필요함.

4.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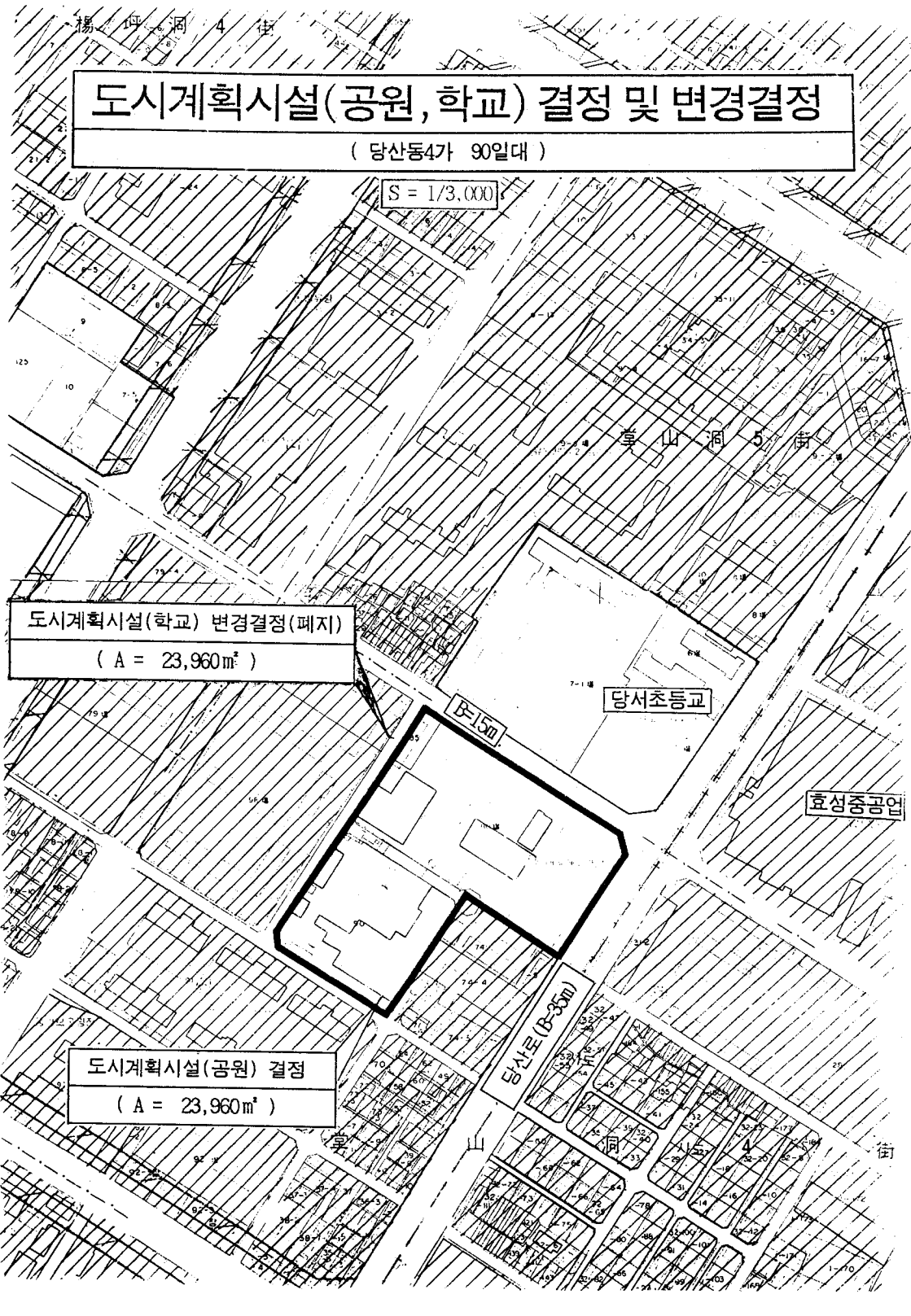
- 추진경위
 - '96. 10. 14 : 도시계획시설(공원)결정 조속추진 지시(서울시)
 - '96. 11. 21 : 공람공고
 - 의견제출 - 공원결정 반대 : 토지소유자(대선제분, 대우, 토공, 라이프)
 - '96. 12. 23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보류)
 - 영등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원배치 제검토
 - '97. 10. 7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보류)
 - 장기간 사유재산을 제한하다가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은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할 것이므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함.
- 당초 투자계획
 - 문래동 3가 9 일대(대선제분) : 34,650백만원('98~2000)
 - 당산동 4가 90 일대(대우, 조선선재) : 26,727백만원('99~2000)
 - 여의도동 61-1 일대(토공, 라이프) : 67,053백만원('98)
- 우리구 계획에 의거 입안한 여의도동 61-2번지 토지에 공용의청사 건립계획은 구 재정여건상 보류됨.



도시계획시설(공원, 학교) 결정 및 변경결정

(당산동4가 90일대)

S = 1/3,000



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(폐지)
(A = 23,960㎡)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
(A = 23,960㎡)

